『20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종합사업지원』

- 평가 기준(안) -

2026. 11.

국토안전관리원 KALIS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Green Remodeling Center

Ⅰ 평가 개요

□ 평가 개요

○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5조에 따라,

- (1단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바탕으로 협상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 심의 후 2단계 협상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심의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2단계) **총괄·운영기관**은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사업내용·예산배분 등)**을 통해 본 사업의 최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계법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5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 (1단계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따라 총점 10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가점 0.5점*)을 배점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가점은 정량평가 점수 20점 한도 내에서 추가 가능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종합사업지원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안)」 참고

** 협상대상자는 위원별 심의결과 평균점수가 65점 이상자(협상적격자)만 해당(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발표 평가 방법

① 발표평가 : 사업내용을 PPT 또는 PDF로 요약하여 발표

② 발표시간 :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문답 15분)**

* 공모 신청기관 수에 따라 발표시간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표자료를 재요구 할 수 있음

** 발표순서는 공모 신청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며, 신청기관의 요구에 의한 발표순서는 변동은 없음

- 합산한 평균점수가 **동일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 심의평가 결과가 **평균 65점 이상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2단계 평가방법) 1단계 **협상대상자의 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총괄·운영기관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경우,

-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별도의 협상은 생략**(총괄·운영기관-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별로 협상진행)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예산** 및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협상기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을 **포기한 경우** 또는 **주요 협상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봄**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은 그 사유를 공개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총괄·운영기관 간 협의**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음

○ (**재공모**) 선정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이 **10개**에 **미달**하는 경우, 관계규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 등)에 따라 **미선정 기관 수의 범위**에서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음

Ⅱ 평가 기준 (1단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20	사업수행 능력	· 경영상태 · 재무구조 - 공인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	10
			· 전문인력 - 사업 총괄 책임자 등급 - 사업 투입 인력 및 규모	10
			· 가점 - 신인도 평가	0.5
소 계 (①)				20
정성평가	30	사업수행 계획	· 사업수행목표 및 추진계획 - 사업 추진목표와 구체적 추진내용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적정성, 계획의 체계성 등	10
			· 사업의 세부수행 방법 - 과업설명서에 명기된 세부과업의 추진방향 및 방법의 적정성 - 과업수행 세부추진계획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과업수행능력 등 - 평가결과 분석, 문제점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방안의 적정성	10
			·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 업무별 추진계획 및 단계별 세부일정계획의 적합성	10
	20	사업지원 기술	· 사업지원 기술의 우수성 및 전문성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분석 방법의 적정성 - 세부과업 목표달성을 위한 적용기술의 우수성 및 전문성	10
			· 사업지원기술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성 - 세부과업 수행에 따른 성과 실현가능성	10
	30	예산집행 계획 및 사업관리 능력	·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 예산 배분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등	10
			· 사업관리계획(인력 · 사후 관리계획 등) - 사업 추진 일정 관리 방안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 위험관리·자원관리·보안관리 등의 적정성 등 - 과업 수행 조직 및 분야별 참여 인력 구성의 적절성 - 일정별 참여 인력 규모 및 적정성 등 - 기타 지원계획 등	10
			· 관련기술 이전 - 보유한 신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사업 관계자 교육 계획 등	10
소 계 (②)				80
합 계 (①+②)				100

※ 정량평가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평가하며, 가점은 정량평가(20점) 범위 내에서 적용

1 평가 배점표 세부 사항 (정량평가 - 기관의 경영 상태)

○ (평가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경영상태) 최대 10점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8.5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공고일 기준 12개월 전까지 확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본 사업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사업비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 산식 = {(A사 점수 × A사 사업비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사업비 지분율)}

※ 예시) A사(대표보조사업자(10점), 사업비 60%)·B사(공동보조사업자(9점) 사업비 40%)가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할 경우, {(10점 × 0.6) + (9점 × 0.4)} = 6.0 + 3.6 = 9.6점

2 평가 배점표 세부 사항 (정량평가 - 사업 총괄 책임자 등급 및 투입 인력)

○ (평가자료)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등

- (사업 총괄 책임자 등급(기술 등급)) 최대 3점

사업책임자 등급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이하
배점	3	1

- (사업 투입인력 규모 평가) 최대 7점

사업 투입인력	15명 이상	15명 미만 10명 이상	10명 미만	0명
배점	7	5	2	0

1.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에 근거하여 평가
2.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는 "건축" 또는 "기계-공조냉동 및 설비"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등급과 경력으로 한정함
3.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직무분야는 "건설" 또는 "설비" 부문 등급과 경력으로 한정함
4. 실제 참여여부가 의심되는 투입인력이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5. 구조안전전문가는 직무분야가 '건축', 전문분야가 '건축구조'인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기술부문이 '건설부문'이며 전문분야가 '구조'인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에 한함
6. 컨소시엄 형태 참여의 경우 각 기관의 인력 합계로 산정함
7. 사업책임자는 투입인력에서 제외함
8. 관련 증빙자료는 현재 소속기관이 표시되어야 함

3 가점 : 신인도 평가

○ (평가자료) 중소기업확인증·여성기업확인증 등

- 신인도 평가점수 : 0.5점

- 신인도 세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책지원	A.「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0.5
	B.「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0.5
	C.「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0.5
	D.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0.5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5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5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5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5

주1)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 고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확인증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여성기업확인증
장애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기업 확인서
가족친화기업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서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지정서

2.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3.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0'점

□ 평가 배점표 세부 사항 (정성평가 평가척도)

구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10점	10	9	8	7	6	5
7점	7		5	2		0
3점	3			1		
0.5점	0.5			0		

≪별지 제1호≫ 평가위원 채점표

『20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종합사업지원』 평가위원 채점표

사업신청기관	

평가 방법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세부 내용	배점	평가 척도 ← 최고			최저 →			점수
정량 평가 (20)	사업 수행 능력 (20)	경영 상태	공인신용평가 기관의 기업 신용등급 확인서	10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10.0	9.5	9.0	8.5			
		전문 인력	사업책임자 기술등급	3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이하				
					3		1				
			사업 투입 인력 규모 평가	7	15명 이상	15명미만~10명이상	10명 미만	0명			
					7	5	2	0			
		가점	신인도 평가	0.5	적용		미적용				
					0.5		0				
정성 평가 (80)	사업수행 계획 (30)		사업 수행목표 및 추진계획	10	사업수행목표 / 추진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10	9	8	7	6	5	
			사업의 세부수행 방법 적정성	10	과업추진방향 / 수행능력 / 문제해결능력						
					10	9	8	7	6	5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10	항목별 세부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9	8	7	6	5	
	사업지원 기술 (20)		사업지원 기술의 우수성 및 전문성	10	조사분석 방법의 적정성 / 적용기술의 우수성						
					10	9	8	7	6	5	
			사업지원 기술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10	문제해결 위한 기술지원방법 / 성과 실현가능성						
					10	9	8	7	6	5	
	예산집행 계획 및 사업관리 능력 (30)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10	예산집행계획 및 투자계획의 적절성						
					10	9	8	7	6	5	
			사업관리계획 (인력·사후 관리계획 등)	10	인력관리 · 사후 · 사업 全과정 관리계획						
					10	9	8	7	6	5	
			관련기술 이전	10	신기술·기법의 소개 및 교육						
					10	9	8	7	6	5	
합 계				100							

본 평가위원은 「20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종합사업지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위와 같은 평가결과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 ○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평가결과표

『20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종합사업지원』 선정위원회 평가결과표

권역명	기관명	심사위원 채점 결과							총점 (평균)	결 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서울권	○○○									
경기권	△△△									
강원권(1)	□□□									
강원권(2)	ＤＤＤ									
충북권	▽▽▽									
충남권	·									
전북권	·									
전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 심사위원은 편의상 ‘가’, ‘나’, ‘다’, ‘라’.....로 표기
※ 평균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최상’과 ‘최하’를 제외한 점수의 합계 평균값
※ 결과란에는 ‘적합’과 ‘부적합’으로 표시

본 평가위원은「20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종합사업지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평가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평가위원장 ○○○ (인)
평가위원 ○○○ (인)
평가위원 ○○○ (인)
평가위원 ○○○ (인)
평가위원 ○○○ (인)
평가위원 ○○○ (인)
평가위원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3호≫ 평가위원 윤리서약서

평가위원 윤리서약서

본인은 「202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종합사업지원」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2. 민간경상보조사업 업무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3. 평가대상 사업책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평가대상기관에 최근 1년 동안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습니다.

4.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5.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향후 2년 동안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